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단 소속 근로자의 비상임이사 자격 부여〉

■ 박해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46호 · 2204521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단 소속 근로자의 비상임이사 자격 부여	3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박해철·이수진위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해철 의원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이수진 의원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단 소속 근로자에 비상임이사 자격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박해철·이수진 의원안 제7조제4항제4호 신설), 비상임이사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임(이수진 의원안 제7조제1항제3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박해철 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① ~ ③ (생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 ----- ----- ----- ----- ----- -----.

1. ~ 3. (생략) <신설> ⑤ · ⑥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u> ⑤ · ⑥ (현행과 같음)
---	--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이수진 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7조(임원) ①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비상임이사 <u>11명</u> 이내	3. ----- <u>12명</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 ----- ----- ----- -----

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⑤·⑥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4. <u>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인</u> ⑤·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이 3년 이상 재직 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¹⁾

1)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를 ①사업주대표, ②근로자대표, ③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²⁾ 따라 기관 소속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포함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실제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구성]

연번	구 분	직위(직책)
1	당연직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2)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4. 감사 1명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사업주대표
2. 근로자대표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임

3	사업주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4	근로자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대 안전공학과 교수 백○○
6		△△대 직업환경의학교실교수 김○○
7		△△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박○○

개정안은 공기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별 공기업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 간 내용상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게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비상임이사 1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한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³⁾ 고려할 필요

3)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한편, 고용노동부는 박해철 의원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 비상임이사를 증원하는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비상임이사를 11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단은 현재 비상임이사를 7명(당연직 2명, 임명직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명가능한 비상임이사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신설된 법 제7조제4항제4호의 자격요건에 맞추어 추가로 임명 가능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비상임이사 자격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공단 소속 근로자를 추가한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명확히 해석되도록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준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제1호에서 3호와의 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인’이라는 문구 삭제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

4) 현행법이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임이사를 12명 이내로 규정한다면 최대 16명의 이사가 임명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저촉될 여지가 있음